

김해 대청천 에피트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해당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 예정자, 예비자)로 선정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김해 대청천 에피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일에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본 주택 특별공급 미청약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https://www.applyhome.co.kr>)을 원칙으로 합니다.
- 신청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추천 여부, 청약신청 및 동·호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당첨자 명단관리 및 청약통장 재사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은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 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상의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지자체 협의 및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08.29.(목)에 김해 대청천 에피트 홈페이지 (<https://brand.hldni.com/sub/views/sale/coop>) 및 대표번호(055-333-3533)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 인허가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며, 향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공급개요 및 일정

-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삼문동 466번지 일원
- 건축규모 : 지하 2층 ~ 지상 29층 4개동,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423세대 [일반분양 131세대 中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13세대]
- 분양가격 및 납부조건 : 추후 입주자모집공고 참고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구분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공급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민영 주택	059.9560	59A	59.9560	22.4030	82.3590	39.4753	121.8343	39
	075.7290A	75A	75.7290	27.3697	103.0987	49.8604	152.9591	22
	075.3559B	75B	75.3559	28.0253	103.3812	49.6147	152.9959	5
	084.4436A	84A	84.4436	30.3173	114.7609	55.5982	170.3591	21
	084.8251B	84B	84.8251	31.8684	116.6935	55.8494	172.5429	43
	084.8251C	84C	84.8251	31.8684	116.6935	55.8494	172.5429	1
합계								131

※ 상기 공급내역은 인허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별 배정세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85㎡이하 세대수의 10%범위 내 공급

구 분 (주택형)	배정세대(예비입주자)						배정 세대수	
	059A	075A	075B	084A	084B	084C	확정	(예비)
국가유공자	1	1	-	-	-	-	2	10
장기복무 제대군인	1	-	-	-	1	-	2	10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	1	-	1	-	2	10
중소기업 근로자	1	1	-	1	-	-	3	15
장애인	소계	1	-	-	1	2	4	20
	경상남도	1	-	-	1	-	2	10
	부산광역시	-	-	-	-	1	1	5

	울산광역시	-	-	-	-	1	-	1	5
	합계	4	2	1	2	4	-	13	65

※ '23.04.01. 시행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5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 분양일정

구분	일자	참고사항
입주자모집공고	2024.08.29.(목)	일간신문 및 김해 대청천 에피트 홈페이지 (https://brand.hldni.com/sub/views/sale/coop)
건본주택 오픈	2024.08.30.(금)	김해 대청천 에피트 건본주택 (경상남도 김해시 무계한빛길 5-10, 1층)
특별공급 청약신청	2024.09.09.(월)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 또는 청약홈 앱 - 인터넷 청약접수(09:00~17:30) 사업주체 건본주택(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함) (경상남도 김해시 무계한빛길 5-10, 1층)
당첨자 발표	2024.09.20.(금)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 또는 청약홈 앱에서 조회
계약체결	2024.10.01.(화) ~ 2024.10.03.(목)	김해 대청천 에피트 건본주택 (경상남도 김해시 무계한빛길 5-10, 1층)

※ 상기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방법은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홈, www.applyhome.co.kr) 신청이 원칙이며, 인터넷 취약계층(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건본주택에서 접수(10:00~14:00) 가능합니다. 단, 건본주택 접수 시에는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건본주택 별도 문의)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구분	내용	
공급기준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p> <p>※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p> <p>※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세대원간 특별공급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p>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p> <p>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p>
무주택 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p>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p> <p>-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p>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김해시, 경상남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울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 국가유공자(장기복무 제대군인 포함) : 국가보훈처 경남동부보훈지청 복지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 중소기업 근로자 : 경남지역 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장애인 :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 /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함

	<p>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p> <p>■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p>예비 입주자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확인 결과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 여부 및 동·호 배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사업주체에서 책임 지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 및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현장 및 견본주택 위치

<p>현장위치도 경상남도 김해시 삼문동 466번지 일원</p>	<p>견본주택 오시는길 경상남도 김해시 무계한빛길 5-10, 1층</p>